

의안번호	제156호
의결 연월일	2007년 월 일 (제264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0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07. 5.)에 따른 조문 정비】

- 사무위임 근거규정 변경(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제104조

【기업지원팀】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 조성시 마다 산업단지별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다만, 도지사가 기 위탁한 일반산업단지와 도지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

【자원관리팀】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현실운영에 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 유사석유 제품 사용량)

- 사용량이 1킬로리터 미만 : 50만원
-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 : 2백50만원
- 5킬로리터 이상 10킬로리터 미만 : 5백만원
- 10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 : 1천만원
- 20킬로리터 이상 30킬로리터 미만 : 1천5백만원
- 30킬로리터 이상 : 2천만원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2분의 1 가중이나 감경 가능)

【지역개발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소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를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산림녹지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보안림 지정·지정해제 및 고시” 및 “보안림 관리 등”에 관한 위임 사무 정비

【환 경 과】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05. 2. 10)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조수보호구역 설정, 조수보호원 임명, 조수 수입신고 등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무를 삭제함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외 개별법

4. 조 례 안 : 불 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6. 관계법령 : 불 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제3조중 “도”를 “충청북도”로 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분야별 기업지원팀 란의 일련번호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업 지원팀	18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도지사가 기 위탁한 일반산업단지와 도지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한 일반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원관리팀 란의 일련번호 제22호부터 제29호를 제23호부터 제30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원 관리팀	22	○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개발팀 란의 일련번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 역 개발팀	17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시행령 제1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림녹지팀 란의 일련번호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지팀	5	○ 보안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라.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 53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 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6의 시장·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5조</u> 규정에 의하여 <u>도지사</u>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생명산업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지방자치법</u>」 제104조<u>충청북도지사</u>.....</p>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u>도지사</u>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⑤(생략) ⑥<u>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u> <u>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u>는 <u>별표 6과 같다.</u></p>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u>충청북도지사(이하</u> <u>“도지사”라 한다)</u>..... ②~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3조(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u>도는</u>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p>	<p>제3조(감독).....<u>충청북도</u>..... ② (현행과 같음)</p>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지원팀	<신설>	<신설>	<신설>	기업지원팀	18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도지사가 기 위탁한 일반산업단지와 도지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한 일반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조
자원관리팀	<신설> 22 ~ 29	<신설> <생략>	<신설>		22 23 ~ 30	○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동법 제29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현행과 같음>
지역개발팀	17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결정(변경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역개발팀	17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결정(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산림녹지팀	5	○보안림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해제 다. 보안림 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라.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금지 및 제한 마. 보안림의 지정 및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바.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의 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산림녹지팀	5	○보안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라.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17	• 조수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체제 및 고시 나.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등의 행위 및 이용 개발등의 허가승인의 협의 다. 손실보상 라. 특별보호지구안에서의 수목의 벌채등의 허가등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4조, 동법시행령제4조 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제4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제4조제4항 동법시행령제6조	환경과	<삭제>	<삭제>	<삭제>
	18	• 조수보호원등의 임명 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가. 조수보호원등의 임명 또는 위촉 나. 조수보호원등의 해임 또는 해촉 다. 조수보원증 및 명예조수보호원증 발급 및 대장정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5조, 제5조의2동법시행규칙제9조 동법제5조의4 동법시행규칙제12조		<삭제> ≥	<삭제>	<삭제>
	19	• 수입 도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등 신고 수리	동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제52조		<삭제>	<삭제>	<삭제>

[별표6]

시장 · 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

현행				개정안			
일련번호	단지별	수임기관	근거및적용법규	일련번호	단지별	수임기관	근거및적용법규
1	충주1지방산업단지	충주시장	산업집적 활성화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광혜원산업단지	진천군수	및 공장설립에 관한				
3	소이산업단지	음성군수	법률 제30조				
4	니트 지방산업단지	음성군수					

관계법령 발췌

공 통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기업지원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자원관리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제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4.27>

1.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의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
대행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석유 정제업자		석 유 수 출 입 업 자	석 유 판 매 업 자				석유 대 체 연 제 · 수 입 업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유 사 석 유 제 품 사 용 자
		등 록 대 상	신 고 대 상		일 반 대 리 점 · 용 제 대 리 점	주 유 소 · 용 제 판 매 소 · 부 생 연 료 유 판 매 소	부 산 물 인 석 유 제 품 판 매 업 자	신 고 대 상		대 리 점	주 유 소	판 매 소	
1. 법 제5조제 2항 후단 · 제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 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3천 만원	2천 만원										
2. 법 제9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3천 만원									
3. 법 제29조의 규 정을 위반하여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 서 사용한 경우 가. 1킬로리터 미만 나.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 다. 5킬로리터 이상 10킬로리터 미만 라. 10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 마. 20킬로리터 이상 30킬로리터 미만 바. 30킬로리터 이상	법 제49 조 제1항 제2호 의2												50만원 2백50만 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4. 법 제32조제 2항 또 는 법 제33조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2천 만원	5백 만원	3백 만원	3백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석 유 판 매 업 자				석유 대체연료 제조·출입자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자			유사 석유제품사용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 대리점·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 판매소·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신고 대상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5. 법 제38조제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3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1천만원 (석유비축 대행업자 「송유관안전 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는 이에 준함)	2백 만원 (주요 석유소 비자는 이에 준함)	1천 만원	1백 만원	2천 만원	1천 만원	2백 만원	2백 만원	
6. 법 제9조제 2항 또는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1천 만원	5백만원	3백 만원	5백 만원	2백 만원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천 만원	6백 만원	6백 만원	3백만원	2백 만원	3백 만원	1백 만원	6백 만원	3백 만원	2백 만원	2백 만원	

비 고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지역개발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는 다음 각목의 공원
 -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 ②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②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산림복지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保安林)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안림의 지정해제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산림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도 또는 방화선(放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보안림의 지정)

법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51조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지정해제 하려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4. 지정 또는 해제 년월일
5. 이의신청기간

④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2조 (보안림 안에서의 시업허가 신청 등)

①법 제45조에 따라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 그 밖의 시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내지 축척 1천 200분의 1)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그 밖에 시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환 경 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반출의 금지대상인 경우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鎮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2조(야생동·식물보호원 등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하고자 하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야생동물의 수출·입등 허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 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입등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입등 허가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야생동·식물보호원증)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동·식물보호원증을,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증의 발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조수보호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의 번식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화재의 진화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 및 예비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관련단체 등이 자연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 3-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 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기타 휘귀조수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서 조수보호구를 설정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수보호원)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명예조수보호원) 시·도지사는 자연보호 또는 조수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4(조수보호원 등의 해임·위촉)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5조(조수의 수출입) ①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이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 할 수 없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수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는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수보호구의 설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면적이 큰 도시의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조수보호구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우 조수보호구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협의에 응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조수보호구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손실을 받은 자와 환경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된 물건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에 고나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조수보호원의 자격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수보호원으로 임명하거나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조수보호· 또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조수보호에 관심이 많은 이장·임업후계자·새마을지도자 또는 독립가

3. 기타 조수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조수보호원증 발급) ①시·도지사는 조수보호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수보호원증을, 명예조수보호원에게는 별제제7호서식의 명예조수보호원증을 발급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보호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조수보호원증의 발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 등의 신고) 조수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6항 및 법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하거나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